발 간 등 록 번 호
57-6310000-100058-10

2028 Ulsan International Garden Expo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AI수도 울산 산업수도 울산

202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발간사

시민의 권익, 행정의 신뢰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가 행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양한 갈등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중립적인 시각에서 고충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시민의 권익 보호 기관입니다.

행정의 논리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주요 고충민원 사례와 처리 과정, 그리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권고 사항과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기록을 넘어, 시민여러분의 경험과 목소리가 축적된 사회적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울산은 지금 산업과 도시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가치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드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살피고, 작은 불편도 가볍게 넘기지 않으며, 시민의 권리가 존중받는 울산, 소통과 공감이 살아 있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더 나은 행정을 만들어 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연간보고서가 시민 권익 증진은 물론, 울산의 미래 행정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3.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목차

CONTENTS

Ⅰ 2025 여정

1. 시민과 함께한 2025 / 06
2. 위원 현황 / 08

Ⅱ 위원회 조직

1. 설치 배경 및 운영 근거 / 10
2. 위원회 주요 연혁 / 11
3. 위원회 구성·운영 / 12
4. 위원회 주요 기능 / 14
5. 고충민원 처리 흐름도 / 17
6. 관계 법령 / 20

Ⅲ 2025 위원회 활동 성과

1. 고충민원 주요 성과 및 종합평가 / 52
2. 고충민원 처리현황 / 52
3.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54

Ⅳ 2025 운영 현황

1. 위원회 회의 현황 / 58
2. 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 58
3.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61
4.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운영 / 71
5. 국민권익위 합동 실지조사 / 73
6. 양산시 옴부즈만 울산 시고위 방문 / 74
7. 고충민원 권익구제 포럼 / 75
8. 교육 및 역량강화 / 76
9. 홍보 / 77

Ⅴ 우수활동 사례 / 80

I 2025 여정

1. 시민과 함께한 2025
2. 위원 현황

1. 시민과 함께한 2025

1월
- 제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제2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2024년 4분기 고충민원 이행실태 점검 및 결과 보고
- 안정적인 고충처리 활동 지원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2월
- 제3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제4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3월
- 제5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제6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2024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발간 및 배포

4월
- 2025년 1분기 고충민원 이행실태 점검 및 결과 보고
- 2025년도 찾아가는 시민(기업)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제7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2025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참석
- 제 8 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제 9 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제10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5월
- 제1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고충민원 실지조사 현장 확인
  (권익위,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김해국토관리사무소)

6월
- 제12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제13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제 1 회 찾아가는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 양산시 옴부즈만 운영 관련 우리시 선진사례 방문

7월

- 권익위 주관「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운영
- 2025년 고충민원분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응
- 2025년 2분기 고충민원 이행실태 점검 및 결과 보고
- 제14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제15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2025년 하반기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8월

- 2025년 고충민원분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실적 준비
- (2025년 신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물 제작
  - 다국어 고충처리 안내책자(5개국 언어 제작, 배포)
- 제16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9월

- 제17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제 2 회 찾아가는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 제 3 회 찾아가는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 제18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제19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제 4 회 찾아가는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 제 5 회 찾아가는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10월

- 2025년 3분기 고충민원 이행실태 점검 및 결과 보고
- 제20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제2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제22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제23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11월

- 제24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 2025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권익구제 포럼 운영
- 제25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12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물(브로슈어) 제작
- 제26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2025년 4분기 고충민원 이행실태 점검

2. 위원 현황

위원장
이 채 홍

-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 울산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교장

부위원장
윤 정 록

- 7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 울주군청 언양읍장
- 울주군청 삼남읍장

위 원
박 호 수

- 남구청 복지경제교육국장
- 남구 의회 사무국장
- 남구고래문화재단 인사위원회위원

위 원
권 귀 원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수사과장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 울산지방검찰청 공안과장 직무대리

위 원
여 태 익

-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
- 울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장
-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장

위원 위촉(자격요건)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기관 추천을 통해,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촉하였다.

II 위원회 조직

1. 설치 배경 및 운영 근거
2. 위원회 주요 연혁
3. 위원회 구성·운영
4. 위원회 주요 기능
5. 고충민원 처리 흐름도
6. 관계 법령

1 설치 배경 및 운영 근거

설치 배경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선8기 시정 운영 기조인 열린행정을 바탕으로, 시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됨.

▶**고충민원**이란 울산광역시와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선8기 울산 시민고충처리위 본격 가동

기존의 시민신문고위 강화
고충민원만 담당 전문성 제고

▲ 김두겸 울산시장은 28일 시장집무실에서 민선 8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채홍 위원장, 윤정록 부위원장 등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해결을 당부했다.

민선 7기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할 '민선 8기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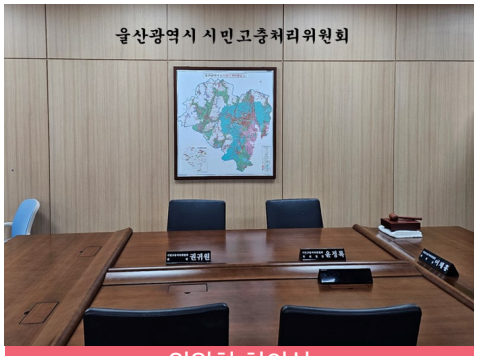

위원회 회의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울산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울산시 권익인권담당관, 시민고충처리위원, 양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를 열고 우수사례 발표 및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을 토의했다.

울산·경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토의

2 위원회 주요 연혁

○ **2022. 09. 08.**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2022. 09. 28.** : 제1기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5명)

○ **2022. 10. 05.** : 민선8기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개시
- 제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운영

○ **2022. 12. 29.**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

○ **2023. 02. 28.** : 2022년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3. 10. 04.**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해촉(2명)

○ **2023. 11. 21.**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1명)

○ **2024. 01. 12.** : 안정적인 고충처리활동 지원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 **2024. 02. 14.** :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위한 찾아가는 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시책 발굴

○ **2024. 02. 27.** : 2023년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4. 03. 01.**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1명)

○ **2024. 05. 24.** : 울산광역시 찾아가는 기업고충처리위원회 개시

○ **2024. 09. 30.**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 **2024. 11. 13.**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고충민원 관련 관계기관 회의

○ **2024. 12. 31.** : 2024년 고충민원해결 우수 유공자 표창

○ **2025. 01. 10.** : 안정적인 고충처리활동 지원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 **2025. 03. 27.** : 2024년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5. 04. 01.** : 2025년도 찾아가는 시민(기업)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2025. 05. 30.** : 고충민원 실지조사 현장 확인(권익위, 시고위, 김해국토관리사무소)

○ **2025. 06. 27.** : 양산시 옴부즈만 운영 관련 우리시 선진사례 방문

○ **2025. 07. 15.** : 권익위 주관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운영

○ **2025. 08. 18.**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물 5개국 언어 제작·배포

○ **2025. 11. 11.**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권익구제 포럼 운영

○ **2025. 11. 26.**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3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조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대한 결정
3. 종전의 의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35조의 준용 규정인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은 재적의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사무 부국장,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사무 부국장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운영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성·운영

○ 구 성 : 민간전문위원 5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3)
- (위촉절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

○ 임 기 : 4년(연임 불가)

○ 회 의 :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 심의·의결

※ 권익인권담당관 내 고충민원지원팀(팀장 1명, 조사관 3명)을 두어 위원회 업무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 인력: 정원 5명 / 현원 5명 ※ 민간 전문위원 5명

(2025. 12. 31. 현재)

구 분	총계	일 반 직					민 간 전문위원
		소계	4급	5급	6급	7급	
정원	5	5	1	1	2	1	5
현원	5	5	1	1	2	1	5

4 위원회 주요 기능

근거조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8조(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2. 구 · 군(시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사무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18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및 시 소속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시 및 시 소속기관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시 및 소속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주요기능

❶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위원회는 관할권 내에 있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고충민원(다수인민원 포함)으로 접수하여 조사한다.

민원 조사

– 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실시된다. 위원회에서는 정확한 민원 조사를 위해 관련 부서에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관련 부서의 장은 자료 등의 제출 요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게 하도록 시정권고 할 수 있으며,
• 행정기관 등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민원요구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 기관에 의견 표명을 한다.

❷ 불합리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민원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관할권 내 법령(조례, 조례 시행규칙 등) 및 제도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계 행정기관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법령과 제도·정책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시정권고)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경우 시정권고 및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이에 대한 취소·변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표명)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고(의견표명)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구제하고 있다.

❸ 홍보·교육 및 교류·협력

•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운영, 전광판 영상표출, 울산광역시 공식유튜브 채널 등재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요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홍보자료 배포로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알리고 있다.
• 이와 함께 위원 및 조사관, 인·허가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처리 관련 워크숍 및 전문교육 과정에 참석 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기법·사례 등을 습득·공유하고 있다.

❹ 조사결과 보고 및 공표 권한

•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 시정권고 및 권고한 내용, 관련 부서의 처리결과 등에 대해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 유형

시정권고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표명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의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 합의하는 경우
조정·중재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심의안내	민원관련 행정절차·제도를 설명 또는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하여 처리한 경우
각하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이첩	다른 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종결	고충민원을 매듭지어 끝내는 경우
취하	신청하였던 일이나 제출하였던 서류를 거두어들이는 경우

5 고충민원 처리 흐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주요기능

❶ 처리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

❷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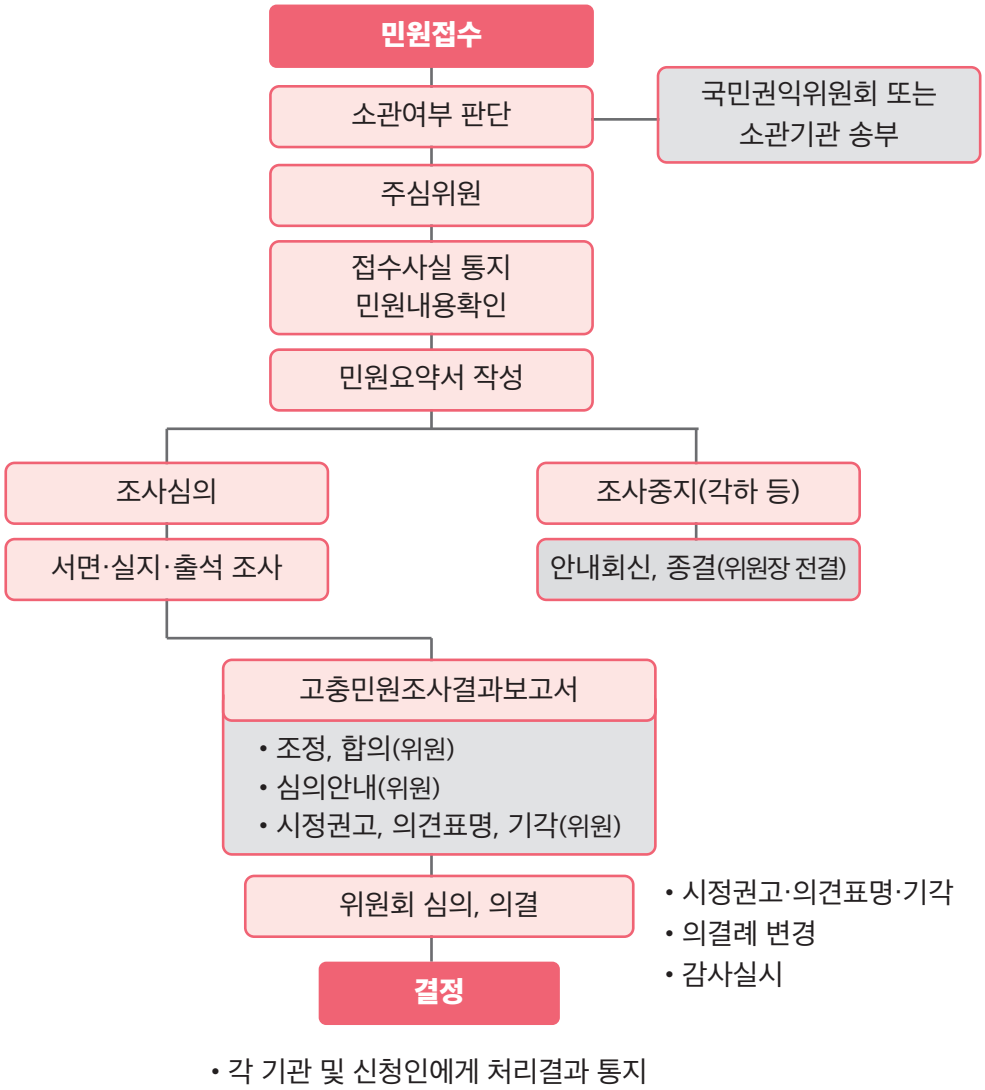

고충민원 신청 및 조사

민원처리 예외 대상(민원의 이송, 각하 등)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③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④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⑤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⑥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⑦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⑧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❶ 고충민원 신청

• 청구요건 : 울산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작성방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 민원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하여 우편·인터넷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후 시민고충처리위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 가능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음.
- 민원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을 중심으로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문서·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

• 신청방법
- 방　　문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시청 의회 1층 권익인권담당관실
- 우　　편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시청 의회 1층 권익인권담당관실
- 인 터 넷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고충민원신청 및 결과
- 전화문의 : 울산광역시청 권익인권담당관실 고충민원지원팀 (☎052-229-3931~4)

❷ 민원의 조사

•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❸ 심의·의결 / 조사결과의 통지

1) 심의·의결

• 조사가 완료된 민원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이 원칙이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회의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사결과 통지

• 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 관계기관.관계부서의 장 및 감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치(결정)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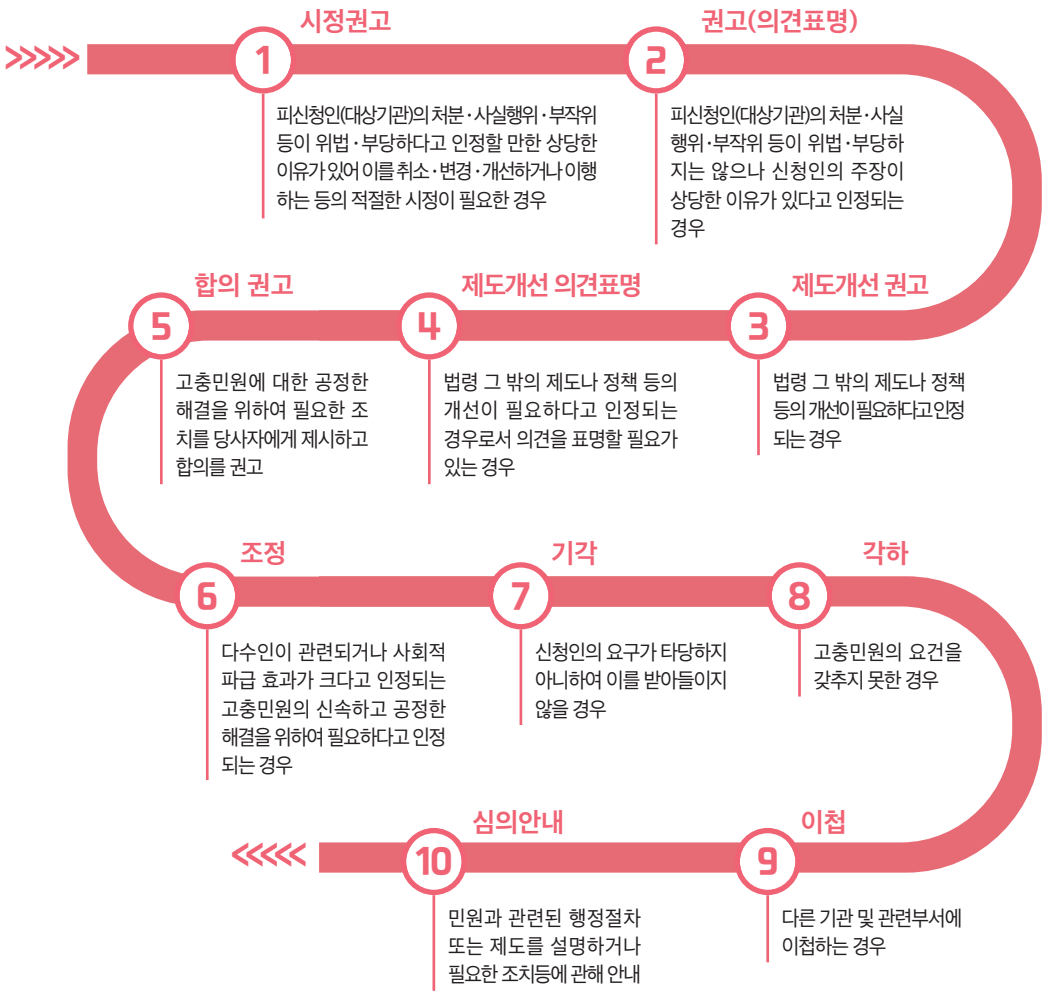

❹ 사후관리

• 위원회는 권고 등 위원회의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 관계 서류의 제출,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6 관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2019. 4. 16., 2020. 12. 29., 2022. 4. 26.>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가 · 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 · 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 삭제 <2021. 5. 18.>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 이권개입 · 알선 · 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 ·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 ·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2020. 6. 9.>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
1. 국민의 권리보호 ·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 · 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 · 홍보 계획의 수립 · 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 · 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 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 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 · 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 · 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 · 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 · 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 · 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5.>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8.>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 · 직원

제18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4. 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4. 16.>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 4.>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 · 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 ·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 · 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 ·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삭제 <2019. 4. 16.>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 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 신청인 ·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4. 16.>

[제목개정 2019. 4. 16.]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4. 17.>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 ·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① 고충민원의 조사 · 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②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감사를 의뢰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 · 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9. 4. 16.>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⑤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2022. 1. 4.>

⑥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9. 4. 16., 2020. 12. 29., 2021. 8. 17., 2022. 1. 4.>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⑦ 관할 수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고발에 대한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9., 2021. 8. 17., 2022. 1. 4.>

⑧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1. 8. 17., 2022. 1. 4.>

⑨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9. 4. 16., 2021. 8. 17., 2022. 1. 4.>

[제목개정 2022. 1. 4.]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 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② 제5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 · 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 · 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2. 1. 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④ 신고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⑤ 위원회는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⑥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제61조(재정신청) ① 위원회는 제59조제6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0. 12. 29., 2021. 8. 17., 2022. 1. 4.>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검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그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4.>

1. 검사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날
2. 위원회가 제59조제6항에 따라 고발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날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2022. 1. 4.>

[본조신설 2020. 12. 29.]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고,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 · 자료의 제출, 사실 · 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신분보장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 · 단체 · 기업 등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5로 이동 <2019. 4. 16.>]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 · 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 · 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4. 16.>
[본조신설 2016. 3. 29.]

[제목개정 2019. 4. 16.]

[제62조의2에서 이동 <2019. 4. 16.>]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 ·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본다. <개정 2025. 1. 21.>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③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1. 4.>

④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2019. 4. 16., 2022. 1. 4.>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 4. 16.>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2. 1. 4.>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2023. 3. 21.>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⑥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⑧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2. 13.>

⑨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신설 2024. 2. 13.>

[제목개정 2019. 4. 16.]

제68조의2(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골프·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5.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4. 2. 13.]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4. 16.>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4. 16.>

1.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4. 16.>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 4. 16.>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회계·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7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목개정 2022. 1. 4.]

제71조(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②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포상금 · 보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 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 ·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 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 ·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 ·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③ 위원회는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④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 보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은 포상금 ·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포상금 ·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 보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 · 보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 보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 · 보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 · 보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기관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제목개정 2022. 1. 4.]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22. 1.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 · 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 · 보안관찰처분 · 보호처분 · 보호관찰처분 · 보호감호처분 · 치료감호처분 ·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1. 1. 12.>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
[본조신설 2016. 3. 29.]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제목개정 2016. 3. 29.]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86조 삭제 <2021. 5. 18.>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2019. 12. 10.>

제88조의2(자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4. 2. 13.]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제목개정 2022. 1. 4.]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9. 4. 16.]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9. 4. 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 ·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 10.] [전부개정 2022. 9. 8. 조례 제2637호]

울산광역시 권익인권담당관 052-229-39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울산광역시와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대한 결정
3. 종전의 의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35조의 준용 규정인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로 심의 ·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은 재적의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 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2. 구 · 군(시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 · 출연기관
4. 시의 사무위탁 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9조(전문가의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법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지 등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사무 부국장,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사무 부국장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운영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⑬ 생략
⑭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22. 9. 8. 조례 제263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은 종전의 제3조제5항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의 신분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계속 중인 고충민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9.] [제정 2022. 12. 29. 규칙 제1003]

울산광역시 권익인권담당관 052-229-39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 소집)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의안작성·배부 등)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서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조사에 참여한 주심위원(해당 고충민원의 안건을 배당받아 조사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의 직원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조사대상 기관("조사대상 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제5조(활동비 지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5급(상당) 임기제공무원의 보수하한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 이외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합의·조정서 작성) ① 법 제44조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주심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합의서에 당사자(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말한다)간 합의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조사결과보고서) 주심위원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결정내용) ①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각하 또는 이송: 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정권고: 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표명: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
5.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심의안내: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또는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결정: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2. 제1항제4호의 결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제10조(결정의 통지) ① 법 제49조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 외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 별지 제10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지서. 이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결정: 결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제11조(의결서의 경정) ① 위원은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대책 등을 기재한 시장의 방침을 받은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의 사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접수 및 민원 조사·처리 지원
2. 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비치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4조(회의록 작성) 제13조제3호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참석자 및 배석자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15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조사대상 기관의 처리결과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을 시장 또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5년
3. 일반문서: 3년

제17조(문서 및 관인) 공문서의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 처리는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 청인과 직인을 사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II 2025 위원회 활동 성과

1. 고충민원 주요 성과 및 종합평가
2. 고충민원 처리현황
3.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고충민원 주요 성과 및 종합평가

주요 성과

처리기간 단축 민선7기 평균 43일 → **민선8기 평균 21일**

- 2023년 평균 24일, 2024년 평균 21일, 2025년 평균 19일
  ⇒ 관계부서 협업 강화를 통해 시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임.

고충민원 접근성 개선

(신규) 다국어 고충처리 안내책자 제작 : 5개국 언어 290부 제작
⇒ 외국인가정의 언어 접근성을 고려한 민원 접근성 제고 및 소통 활성화

최다 민원 처리 민선8기 최다 민원 처리 : 116건
⇒ 2023년(93건), 2024년(88건), 2025년(116건)

종합 평가

전년 대비 민원 처리 효율성 및 신속성 지속 개선

향후 예방 중심 고충관리 및 현장 밀착형 운영 확대 예정

고충민원 처리현황

○ 처리건수 : 총 116건(직접조사 85건, 이송 31건)

※ '23.1월~12월 : 93건(직접조사 59건, 이송 34건) / '24.1월~12월 : 88건(직접조사 81건, 이송 7건)

○ 분야별 현황 (단위:건)

구 분	계	비율(%)	직접조사	이송
계	116	100	85	31
교통, 건설	42	36.2	31	11
환경, 녹지	29	25.0	21	8
도로	22	19.0	15	7
기 타	23	19.8	18	5

※ 직접조사(85건) : 의견표명(25)*, 심의안내(7), 조사중 해결(40), 기타(13)

* 의견표명 수용률 : 96%(25건 중 1건 불수용 -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요청 건)

○ 직접조사 심의유형별 현황

(단위:건)

계	의견표명	조사중해결	심의안내	기각 등
85	25	40	7	13

○ 민선8기 동안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행정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운영한 결과, 2025년에 민선8기 기간 중 최다 민원을 처리함.

구분	민원 처리 건수	비 고
2023년	93건	전년 대비 15건 증
2024년	88건	전년 대비 5건 감
2025년	116건	전년 대비 28건 증

○ 또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관계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개선한 결과, 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시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임.

구분	민원 처리 기간(평균)	비 고
2023년	24일	-
2024년	21일	전년 대비 3일 단축
2025년	19일	전년 대비 2일 단축

※ 민선7기 평균 43일 → 민선8기 평균 21일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고충민원 접수 처리 및 직접조사 현황

○ 2025년도 접수된 총 116건의 고충민원 중 직접조사 처리하기로 한 민원은 85건(73.3%)으로 월평균 7.1건을 직접조사 하였으며, 간접조사(이송)로 종결한 민원은 31건(26.7%)임.

<표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단위 : 건)

계	직접처리			간접처리	
	소 계	완 료	처리중	소 계	이 송
116	85	85	-	31	31

○ 직접조사하여 심의·의결한 고충민원 85건에 대해 결정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견표명 25건, 심의안내 7건, 조사중 해결 40건, 기각 등 13건 으로 의결.

<표2> 직접조사 결정유형별 현황

(단위 : 건)

합 계	의견 표명	심의안내	조사중 해결	기각 등
85	25	7	40	13

위원회 인용 및 부서수용 현황

○ 직접 조사한 고충민원 중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위원회가 이를 인용한 건수*는 65건(76.5%)이고, 심의안내, 기각 등으로 위원회가 미인용한 건수는 20건(23.5%)이며, 직접조사건에 대하여는 2024년 대비 4% 상승한 76% 이상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집계됨.

* 시정권고, 권고(의견표명), 합의·조정, 조사중 해결의 합산한 건수

<표3> 위원회 인용현황

(단위 : 건, %)

합 계		위원회 인용		위원회 미인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85	100	65	76.5	20	23.5

창구별 접수 건수 및 처리기간

○ 직·간접 처리한 고충민원 총 116건에 대한 접수창구별 현황을 보면 현장접수가 70건으로 가장 많고, 방문접수 43건, 홈페이지 3건 순으로 접수됨.

○ 고충민원 116건 중 평균 처리기간은 19일이었으며, 최장기간은 55일, 최단기간은 3일로 나타남.

<표4> 창구별 접수 현황 및 처리기간 (단위 : 건, 일)

합계	창구별 현황				처리기간		
	방문	현장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평균	최장	최단
116	43	70	3	-	19	55	3

피신청기관별 고충민원 현황

○ 접수된 고충민원을 피신청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총 116건 중 구·군 민원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청 43건, 산하 공공기관 4건 등으로 집계됨.

<표5> 피신청기관별 고충민원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시본청	구·군별						공공기관	기타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		
건수	116	43	60	13	16	2	16	13	4	9
비중	100	37.1	51.7	11.2	13.8	1.7	13.8	11.2	3.4	7.8

※ 기타 : 경찰청, 사인간 등

분야별 민원접수 현황

○ 고충민원을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교통건설 관련 민원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녹지 29건, 도로 22건 등 순으로 접수됨.

<표6> 분야별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교통건설	환경녹지	문화	도로	건축주택	복지·보건	도시계획	기타
건수	116	42	29	1	22	1	2	2	17
비중	100	36.2	25.0	0.9	18.9	0.9	1.7	1.7	14.7

※ 기타 : 지방세, 재단 등

현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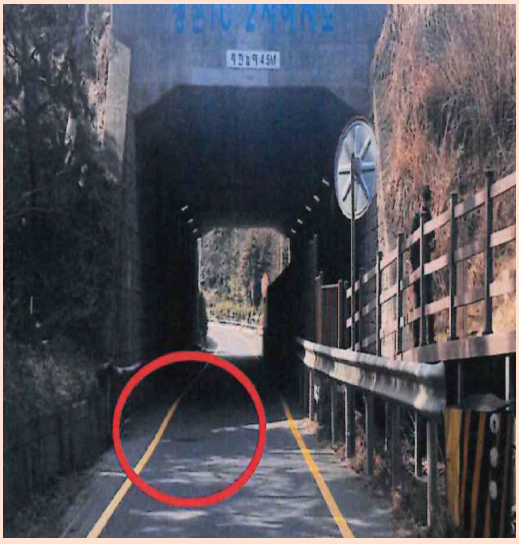

Ⅳ 2025 운영 현황

1. 위원회 회의 현황
2. 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3.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4.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운영
5. 국민권익위 합동 실지조사
6. 양산시 옴부즈만 울산시고위 방문
7. 2025 고충민원 권익구제 포럼
8. 교육 및 역량강화
9. 홍보

1. 위원회 회의 현황

연도	개최횟수	상정안건	의결 안건		
			원안가결	수정가결	기각 등
2025년	26	76	76	0	0
2024년	32	63	63	0	0

2. 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회차	일자	안 건 명
1	01.06.	- 남구 장생포고래로 ○○○번길 수돗물 탁수 해결 요청
2	01.13.	- ○○읍 ○○리 도로편입된 후 남은 잔여토지 보상 요청 - ○○동 ○○○○○○주변 안전휀스 및 볼라드 철거 요청 - ○○동 ○○리 ○○공원 데크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요청
3	02.18.	- 언양 ○○공원 편입 토지 보상 및 해제 요청
4	02.25.	- ○○마을 버스승강장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요청
5	03.04.	-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요청
6	03.10.	- 화합로 보도블럭 파손 보수 요청
7	04.07.	- 북구 연암동 늘푸른공원 앞 인도 보수 및 경계석 높이 정비 - 박상진 호수공원 앞 회전 교차로 진입방향 표시 요청 - 북구 명촌IC2 지하차도 도로파임 보수 요청 - 남구 ○○아파트 앞 도로반사경 보수 요청
8	04.16.	- ○○아파트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요청 - 남구 무거동 ○○○○빌 옆 수목 전정작업 요청 - 남구 종하거리 공영주차장 주차가능 진입대수 현황판 조정 요청
9	04.23.	- 울산○○고 정문주변 교통환경 개선 요청 - ○○읍 복지센터 작은도서관 이용 불편사항 해소 요청
10	05.01.	- 울주군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 입구까지 인도 설치 요청
11	05.07.	- 울주군 ○○면 ○○○교 진출입로에 이동편의시설 요청
12	06.11.	- 북구 강동동 보도 잡초 제거 요청

회차	일자	안 건 명
13	06.16.	- 울주군 관내 경로당 TV수신료 일괄 면제 신청 요청
14	07.22.	- ○○○○1단지 부근 인도 정비 요청 - 남구 옥동 산○○-○○번지 도로(침하) 보수 요청 - 중구 유곡동 ○○○-○번지 일원 농로 보수 요청 - 울산시청사 정원 광장 내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함 설치
15	07.29.	- 중구 우정○○○○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주변 교통환경 개선
16	08.26.	- 불법주차 금지를 위한 차단봉 설치 요청 - ○○로 ○○사거리 부근 자전거도로 공사 요청 - 북구 강동동 ○○마을 주변 도로공사관련 교통환경 개선 요청
17	09.04.	- ○○중학교 앞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요청 - 북구 염포로 ○○○ 현대오일뱅크 입구 도로정비 요청
18	09.12.	-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착공 수리 요청 - ○○시장 아케이드 누수로 인한 빗물판 추락 위험 해결 요청 - 북구 아산로 ○○○○○ 담장 옆 배수로 정비 요청 - 남구 남산로 일원 환경정비 요청
19	10.01.	- 울산대공원 내 야간자전거 출입 통제 및 홍보·계도 요청 - 남구 옥동 ○○○-○번지 우수 오수받이 단차 보수 요청 - 남창 ~ 진하해수욕장 구간 산책로 화장실 설치 요청 - 북구 연암동 무룡1로 ○○○-○ 앞 도로 보수 요청 - 북구 효문공단 인도 주변 환경정비(잡초 제거) 요청 - ○○중학교 정문 부근 시선유도봉 설치 요청
20	10.15.	- 울산대공원 내 반려견 배설물 오염방지 요청 - 북구 ○○○○ 앞 교차로 가로수 정비 - 태화강 대숲 벌레 퇴치 요청 - 남구 중앙로 ○○○ ○○편의점 앞 인도 정비 요청 - 북구 상방공원 내 조명 추가 설치 등 요청 - 북구 ○○도서관 내 자전거 덮개 정비 요청 - 북구 ○○○○학교 정문 앞 인도 정비 요청 - 송정동 ○○○○번지 다리하부 도로 난간 설치 요청 - 북구 상방공원 내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함 설치 요청 - 북구 ○○초교 앞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요청 - 국유지 위험목 제거 및 제초 요청

회차	일자	안 건 명
21	10.20.	- ○○초교 앞 사거리 육교바닥 보수정비 요청 - 온산 ○○교 야간 LED 경관조명 설치
22	10.29.	- 중구 반구1동 ○○○○○○ 2차 앞 도로반사경 보수 요청 - 남구 삼산로 ○○○ 앞 도로 시선유도봉 정비 요청 - ○○교 꽃 걸이 화분 급수 호스 정비 요청 - 중구 남외2길 ○○ 일원 인도변 나뭇가지 정비 요청 - 북구 화동 2길 ○○ 일원 인도변 나뭇가지 정비 요청 - 북구 송령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요청 - 북구 효문동 ○○○-○번지 인근 중앙선 구간 도로 파임 정비 요청 - 남구 신정동 ○○○-○○번지 일원 도로 파임 정비 요청 - 중구 강북로 자전거도로 보수 요청
23	11.05.	- 골프공 피해 방지를 위한 비구방지망 설치 등 요청 - 남구 ○○정문 앞 도로 급커브 완화 조치 요청 - 지방하천(도로)편입 토지 사용료 지급 및 원상복구 요청 - 중구 반구동 ○○○○○ 일원 과속방지턱 재도색 요청 - 중구 반구동 ○○고등학교 일원 과속방지턱 재도색 요청 - 중구 반구로 ○○ ○○○○○○ ○○○○ 앞 시선유도봉 재설치 요망 - 중구 반구정 ○○길 ○○ 앞 도로 중앙시선유도봉 파손 수리 요망 - 중구 반구정 ○길 ○ 앞 도로 시선유도봉 설치 요청 - 번영교 구간 옹벽 담쟁이덩굴 확산에 따른 환경정비 요청
24	11.12.	- 연암동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 남구 ○○초교와 ○○○마트 사이 이면도로 보안등 설치 요청
25	11.25.	- ○○○○○사거리 울산방향 도로 교통환경 개선 요청
26	12.16.	- 중구 ○○○○장 수산물 판매 활어차 악취발생 방지 요청

3.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Ⅰ 울산 OK현장서비스의 날 고충상담 : 5회, 70건

회차	일시/장소	참여인원	개최 결과
1회	○일시 : '25. 6. 17.(화) 10:00 ○장소 : 중구 성안동 금호공원	3명 (위원1, 조사관2)	○ 5건 상담 - 5건 고충민원 처리
2회	○일시 : '25. 9. 3.(수) 13:30 ○장소 : 남구 문수체육관	5명 (위원2, 권익인권담당관, 조사관2)	○ 15건 상담 - 15건 고충민원 처리
3회	○일시 : '25. 9. 3.(수) 14:00 ○장소 : 농소3동 쇠부리문화거리	3명 (위원2, 조사관1)	○ 11건 상담 - 11건 고충민원 처리
4회	○일시 : '25. 9. 24.(수) 15:00 ○장소 : 중구 반구1동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2명 (위원1, 조사관1)	○30건 상담 - 30건 고충민원 처리
5회	○일시 : '25. 9. 26.(금) 14:00 ○장소 : 북구 송정동 송정복합문화센터	4명 (위원2, 조사관2)	○ 9건 상담 - 9건 고충민원 처리

Ⅰ 제1회 찾아가는 울산 OK현장서비스의 날 민원상담 현황

신청인	민원제목	민원내용	비 고
서○○ (남구 옥동)	주차금지 요청	남구 옥동 ○○마트→○○중학교 좌회전(○○○○맞은편) 지점 주차 차량으로 인해 마을버스 좌회전하지 못하여 교통이 정체 되고있어, 차단봉 설치 필요	직접 조사
도○○ (남구 옥동)	도로 보수 요청	법원→○○골프연습장 방향 2차로 부근 도로 파임으로 인해 사고 위험 높음 - 내리막길로 자전거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 빠른보수 필요	직접 조사
손○○ (중구 복산동)	중구 복산동 ○○○○ 1단지 부근 인도 불편	중구 복산동 ○○○○ 1단지 부근 (복산동 ○○○-○○) 울퉁불퉁한 보도 블록 으로 걸어다니기 불편 할 뿐만 아니라, 인도블럭에 무단쓰레기 방치로 환경정비 필요	직접 조사
이○○ (북구 연암동)	쓰레기 관련	북구 연암동 ○○○○빌라와 주변의 주택 및 상가, 회사 등에서 재활용, 일반쓰레기의 무분별한 방치로 인해 통행지장 및 환경오염, 미관상의 문제 등 발생함. 주변에 재활용 함 설치 건의 및 쓰레기 바르게 버리기 홍보 요청	직접 조사
박○○ (중구 성안동)	버스노선 관련	중구 성안동→복산동 행정복지센터, 진장동 대형마트 등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 확충	이송

| 고충민원 상담 현장 사진

시민의 고충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종갓집 현장서비스의 날
고충민원 상담
울산광역시청 권익인권담당관
시민의 고충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종갓집 현장서비스의 날
고충민원 상담
울산광역시청 권익인권담당관
울산광역시 중구
시민의 고충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종갓집 현장서비스의 날
고충민원 상담
울산광역시청 권익인권담당관
울산광역시 중구
시민의 고충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 신청 · 상담

Ⅰ 제2회 찾아가는 울산 OK현장서비스의 날 민원상담 현황

연번	신청인	민원제목	민원내용	비고
1	박○○ (남구 옥동)	온산 ○○교 야간 LED 조명 설치 요청	온산 ○○교에 야간 LED 조명 설치 요청 - 경관을 아름답게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	직접 조사
2	구○○ (북구 송정동)	북구 ○○공원 밝은 조명 설치 및 잡초 제거	울산 북구 연암동 소재 ○○공원의 조명이 너무 어둡고 잡초가 무성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음.	직접 조사
3	박○○ (북구 화봉동)	북구 ○○공원 내 자전거 보관소 덮개 교체	울산 북구 연암동 소재 ○○공원 내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의 덮개 파손, 빠른 교체 필요	직접 조사
4	이○○ (북구 연암동)	연암동 ○○식당 맞은편 주차 단속 요청	울산 북구 연암동 복개천 ○○식당 맞은편 코너 부근 불법 주차로 인해 교행시 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필요	직접 조사
5	이○○ (북구 연암동)	도로 패임 보수 요청	울산 북구 연암동에서 정자가는 방향 ○○ ○○○주유소 앞 도로패임 현상으로 타이어 펑크의 위험 있음. 빠른 조치 부탁 드림.	직접 조사
6	이○○ (남구 무거동)	북구 ○○공단 환경정비 요청	울산 북구 전역이 너무 지저분 함. 특히 ○○공단 인도잡초 무성하여 걸어다니기 힘듦. 환경정비 요청	직접 조사
7	서○○ (북구 연암동)	○○초등학교 정문 앞 환경정비 요청	울산 북구 ○○○○아파트 뒷 벽에서 뻗어나오는 나뭇 가지로 인해 ○○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인도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조치 시급함.	직접 조사
8	강○○ (북구 연암동)	화봉○○ 밑 하천변 한쪽 가드레일 설치 요청	울산 북구 소재 화봉○○ 밑 하천변에 한쪽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나 반대쪽은 설치되어 있지않아 상당히 위험함. 가드레일 설치로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을 느낌.	직접 조사
9	정○○ (북구 연암동)	북구 연암동 ○○○○○○B동 앞 과 속방지턱 설치 요청	울산 북구 연암동 ○○○○○○ B동 앞 사거리는 교통량이 많고 과 속이 심함. 도로 옆 주택이 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직접 조사

Ⅰ 제2회 찾아가는 울산 OK현장서비스의 날 민원상담 현황

연번	신청인	민원제목	민원내용	비고
10	노○○ (남구 무거동)	불법주정차 봉 설치요망	유곡 ○○○○○과 유곡 ○○○○○○ 사이 소방도로 중 아파트에서 도로로 내려가는 길목에 좌.우회전 차선이있음. 우회전 도로변에 출근길 주차로 인해 좌회전 차선에 차가 대기해 있으면 불법주차로 인해 우회전이 안되므로 이면도로 변에 단속 봉 설치 요망	직접 조사
11	최○○ (북구 송정동)	북구 ○○공원 애완견 배변함 설치	북구 연암동 ○○공원에 반려견과 산책을 많이 하는데 배변함이 없어 불편함. 시청 광장에도 배변함이 설치되어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들었음.	직접 조사
12	김○○ (북구 송정동)	북구 ○○○도로 버스정류장 냉방장치 설치요망	북구 ○○○도로 ○○초등학교 맞은편 버스정류장의 선풍기 고장 수리요망, 에어컨 설치도 고려하여 주기를 바람.	이송
13	오○○ (남구 신정동)	남구 ○○○○○○ 소음 단속 요망	남구 ○○로 차량, 오토바이 소음 단속 요망 구간단속 등의 방법으로 야간 폭주 운전 경감 방법 등	이송
14	박○○ (남구 삼산동)	개인사유지 전정 작업 요청	남구 여천로 ○○번길 ○○-○(마을 구판장) 뒤편, 개인사유지로 나무정리가 필요함	이송
15	서○○ (남구 삼호동)	인도 잡초 제거 및 주변 정리 요청	○○○○(삼호동) 태화강○○○○ ○번 주차장부터 남산로 ○○○ 앞까지 인도 보도 블록 잡초가 무성하며 주변 정리가 되어있지 않음. 빠른 시일내 정리 요망	직접 조사

Ⅰ 고충민원 상담 현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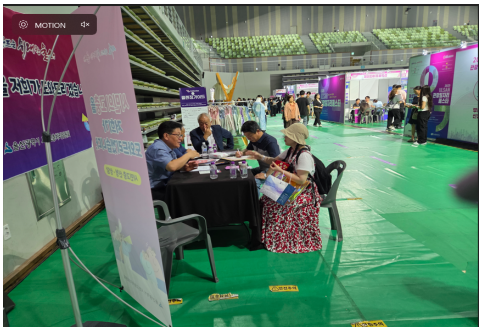

Ⅰ 제3회 찾아가는 울산 OK현장서비스의 날 민원상담 현황

연번	신청인	민원제목	민원내용	비고
1	백○○ (울주군 두서면)	둑을 넓혀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해달라	○○댐 생기기 전부터 산소와 밭 등을 가기 위해 남의 땅을 지나가야하며 땅 주인에게 매번 부탁해야하는 상황. 몇해 전 둑이 무너져 보수를 하였으나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는 상황으로 둑을 넓혀 사람이 다닐수 있는 통행로 확보 요청	직접 조사
2	김○○ (남구 신정동)	대공원 자전거 사고우려, 적극적인 홍보 계도 필요	울산대공원 야간 자전거 출입금지, 통행금지 홍보계도 절실 (야간 러닝 산책 이용객 사고 우려 높음)	이송
3	김○○ (남구 옥동)	대공원 애완견 소변금지 요청	대공원 벤치 반려견 소변금지 푯말 요청(냄새나고 불쾌)	이송
4	권○○ (남구 옥동)	옥동 도로 보수 필요	남구 옥동 ○○-○○번지 도로, ○○○○건너편 보도 ~ ○○○○ 입구 보도까지 발빠지는 등 보수 필요구간 많음.	직접 조사
5	김○○ (북구 농소)	북구 가로수 정비	○○초교앞 교차로(북구 상안동 ○○○○-○○번지) 가로수로 인해 ○○중, ○○초 표지판이 가려서 보이지않음. 전체적인 가로수 전정 필요	직접 조사
6	황○○ (북구 달천)	신호체계 개선요망	북구지역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일괄 신호체계로 변경개선 요망	이송
7	선○○ (남구 신정동)	○○길 확장 요청	○○길(언양읍 남부리 ○○○번지 일원) 확장 요청 - 대형차량 회전 가능하도록 도로 확장 필요	이송
8	송○○ (중구 성안동)	태화강 대숲 벌레 퇴치 요청	삼호동 ○○○○방향 대숲에 벌레가 많아 산책에 큰 어려움이 있음. 방역 강화 필요	직접 조사
9	신○○ (북구 매곡)	○○~○○ 해수욕장 산책로 화장실 설치요청	○○에서 ○○해수욕장으로 가는길이 정비되어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하고 있으나 화장실이 없어 주민 불편 야기됨. 화장실 설치 요청	직접 조사
10	양○○ (남구 선암동)	○○초등 사거리 육교 보수 공사 요청	○○초등학교 사거리에 있는 육교 바닥 파손되어 통행 위험 및 안전사고 우려 정비 요청	직접 조사
11	임○○ (북구 연암동)	인도 보도블럭 수리 (남구 중앙로 ○○○)	남구 중앙로 ○○○, ○○앞 인도보도블럭 파손, 통행안전에 위험 정비 요청	직접 조사

| 고충민원 상담 현장 사진

시민의 고충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 신청 · 상담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의 고충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 신청 · 상담

Ⅰ 제4회 찾아가는 울산 OK현장서비스의 날 민원상담 현황

연번	신청인	민원제목	민원내용	비고
1	박○○	자전거길 보수 요청 (반구1동 ○○빌리지 앞)	반구1동 ○○빌리지 앞 인도 자전거길 훼손으로 보수 요청	직접 조사
2	최○○	인도경계석 정비 요청 (○○체육관 맞은편)	○○체육관 맞은편 ○○○앞 인도경계석 파손으로 정비 요청	직접 조사
3	이○○	도로 정비 요청 (반구1동○○뱅크 ○○주유소 앞)	반구1동 ○○오일뱅크 ○○셀프주유소 앞 도로 파손 정비 요청	직접 조사
4	이○○	과속방지턱 재도색 요청	반구1동 ○○빌리지와 ○○빌라 사이 과속방지턱 재도색 요청	직접 조사
5	김○○	과속방지턱 재도색 요청 (**고 앞)	반구1동 ○○고 앞 과속방지턱 재도색 요청	직접 조사
6	서○○	반사경 교체 요청 (반구1동 ○○○○2차 앞)	반구1동 ○○○○ 2차 앞 반사경 휘어짐으로 교체 요청	직접 조사
7	윤○○	교통섬 경계석 파손 보수 요청	중구 화합로 ○○○번지 ○○사진실 앞 교통섬 경계석 파손으로 보수 요청	직접 조사
8	박○○	노상적치물 단속 요청	중구 번영로 ○○번지 일원 도로변에 재활용품 노상적치물 단속 요청	직접 조사
9	이○○	도로 훼손 정비 요청 (신정동 ○○생명 4차선 앞)	○○마트 울산점 ~ ○○생명 방향, ○○생명 앞 4차선 도로 심하게 파여있어 운전시 차 덜컹거림이 심함.	직접 조사
10	강○○	도로 훼손 정비 요청 (○○○ 울산 신정점 앞)	○○○ 울산신정점 입구 앞 4차선 도로변 높이 편차가 심하여 보수 요청	직접 조사
11	천○○ (남구 중앙로)	가로등 소등 시간 조정	가을철 빠른 일몰시간으로 인해 가로등 소등시간 조정 요청, 보행자 식별 등 일상생활 어려움.	직접 조사

Ⅰ 제4회 찾아가는 울산 OK현장서비스의 날 민원상담 현황

연번	신청인	민원제목	민원내용	비고
12	임○○ (중구 반구동)	○○정문 앞 커버길 곡선화 요청	남구 ○○정문 앞 커버길을 곡선화하여 대형화물차량 운행 원할 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에서 오는 도로 커버길)	직접 조사
13	전○○	차단봉 재설치 요청 (울산 ○○○○ 반구○○정앞)	중구 반구로 ○○ ○○○○ 울산반구강변점 앞 차단봉 파손으로 재설치 요청	직접 조사
14	장○○	중앙탄력봉 교체 요청 (반구정 ○○길 ○○앞)	중구 반구정 ○○길 ○○앞 도로 중앙탄력봉 파손으로 인한 교체 요망	직접 조사
15	최○○	차단봉 설치 요청 (반구정 ○길 ○앞)	중구 반구정 ○길 ○앞 불법주정차로 차량통행 어려움, 차단봉 설치 요망	직접 조사
16	김○○	중앙차단봉 교체 요망 (○○남울산지사 교차로와 ○○학교 좌회전 입구)	남구 ○○남울산지사 교차로와 야음노인정 앞 교차로 차단봉 1개 파손 교체 요망	직접 조사
17	김○○	중앙봉 수리 요망 (삼산로 ○○○번길)	남구 삼산로 ○○○번길 중앙봉 수리 요망(중앙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없어짐 그로인해 도로 양쪽의 불법 주차로 인해 교통혼잡)	직접 조사
18	서○○	외솔교 위 꽃화단 급수호수 정리 요망	외솔교(중구~북구) 위 꽃화단 급수호수가 늘어나 미관상 보기가 흉하여 정리 부탁.	직접 조사
19	윤○○	○○여성병원 맞은편 나무 정비 요망	중구 ○○여성병원 맞은편 강변나무가 도로로 뻗어나와 통행에 지장, 나무 정비 요망	직접 조사
20	정○○	쓰레기 방치물 및 잡초 제거	중구 내황 ○○길 앞 전봇대 부근 쓰레기 방치물 및 잡초 제거 요청	직접 조사
21	권○○	번영교 가드레일 담쟁이 정비요청	중구 번영교 끝지점(울산병원 방향) 가드레일에 담쟁이 타고 올라와서 도시 환경이 지저분해 보임. 정비 요청	직접 조사
22	최○○ (중구 종가길)	잡초 제거 요청 (문죽리 ○○부근)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부근 잡초로 인하여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운행함. 사로고 이어지는 상황이라 위험하여 내려오는 차가 잘 보이도록 잡초 평소에도 관리 부탁	직접 조사
23	손○○ (남구 왕생로)	오수냄새 심하여 새는지 확인요	울산 남구 왕생로 ○○번길 ○○앞 주변 냄새가 매우 심합니다. 오수가 새는 것이 아닌지 의심 스러움. 확인 요망	직접 조사

| 제4회 찾아가는 울산 OK현장서비스의 날 민원상담 현황

연번	신청인	민원제목	민원내용	비고
24	전○○ (중구 다운동)	태화강 소음 해결 요청	남구 구삼호교 방면, 중구 신삼호교 밑에서 매일 대형 스피커음에 노래를 하고 있어 강변전체 소음 심각, 빠른 해결 요망	직접 조사
25	김○○ (남구)	버스운행시간 조절 (장생포 방면)	장생포 들어오는 버스(226,246,416) 3대노선이 동일 함. 시간차를 두고 운행하여야 하나 항상 3대가 같은 시간대에 운행을하여 다음버스 시간까지 25~40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적당한 간격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이송
26	민○○ (중구 태화동)	북부순환도로 소음 불법튜닝 단속 요망	○○○○에 살고있는 주민으로 ○○○○도로의 소음이 너무심합니다. 원인은 ○○튜닝 이륜차와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보여짐. 경찰관들의 상시적인 순찰과 현장 데시벨 측정 조사 필요	이송
27	권○○	볼라드 교체 요청	중구 반구동 ○○○○○○맨션 입구 볼라드 파손으로 교체 요청	이송
28	노○○ (중구)	남구방면 ○○교 밑 커피 노점상 단속	남구 ○○교밑 커피 노점상 합법적인 것인지, 합법적이지 않다면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음.	이송
29	이○○	북구 연암정원 홍보	북구 연암정원에 대한 홍보 필요	이송
30	여○○	동구 주전 고개로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 설치 요망	동구 주전동 주전고개로 방면 야생동물 출몰 증가, 차량 운행시 사고가 많아 위험, 주의표지판이라도 설치 요망	이송

| 고충민원 상담 현장 사진

Ⅰ 제5회 찾아가는 울산 OK현장서비스의 날 민원상담 현황

연번	신청인	민원제목	민원내용	비고
1	박○○	가로등 설치 요청	○○초 ~ ○○○마트 사이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 요청 심야시간 근처 초등학생 방문자가 많아 위험해 보임	직접 조사
2	오○○	인도정비 요청	북구 무룡로 ○○ 맞은편, 무룡로 ○○ 인도 정비 요청 가로수 돌출로 인한 인도 파손	직접 조사
3	서○○	도로정비 요청	○○마트 울산점 맞은편 ○○○○ ○○○ 횡단보도 도로 파임 정비 요청	직접 조사
4	이○○	도로정비 요청	효문공단 내 ㈜**과 ○○○○ 도로 파임 정비 요청	직접 조사
5	이○○	화분 정리 요청	남구 수암시장 ○○약국과 ○○한의원 앞, 도로 중앙 화분 정리 요청 도시 환경 미화관리도 필요한 듯합니다.	직접 조사
6	김○○	***공원환경 개선	북구 ○○어린이공원 방치자전거 등 공원환경 개선 부탁	직접 조사
7	박○○	인도정비 요청	울산○○○고 맞은편 ○○아파트사이 인도 나뭇가지로 통행 지장	직접 조사
8	이○○	시내버스 노선 조정	북구에서 모화노선 일부 조정 필요, 교통 불편	이송
9	정○○	리무진버스 배차 간격 조정	KTX에서 북구로 오는 리무진 버스 배차간격 조정, 교통 불편	이송

Ⅰ 고충민원 상담 현장 사진 고충민원 현장(북구 송정복합문화센터)

4.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운영

국정기획위 모두의 광장 권역별 순회

울산시와 국정기획위원회가 협력하여 시민들이 겪는 다양한 민원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고, 정보를 제공

운영 개요

일시 / 장소 : 2025. 7. 15. 10:00 ~ 15:00 시민홀(울산시청 의회1층)

방식 : 시민들이 새정부에 바라는 제안·민원을 접수, 테마형 집단민원 현장을 찾아 해결 방안 모색

권익위 : 전문 조사관 6명 현장 상담·접수

국정기획위 : 2명(전문보좌역 1, 실무진 1) 현장 방문

절 차

사전 안내	현장 접수·상담	후속 조치
전 실·과·소, 구·군 등 행사 안내, 주민 홍보 등	**접수·상담 (10:00~15:00)** 처리전 작성, 제안·민원 분류	**접수 제안·민원 등록** 모든 제안·민원은 스캔후 국민신문고에 등록 **처리결과 통보** 처리 후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운영 결과 : 총 106건 접수

구분	계	행정 문화	국방 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노동	산업 농림	주택 건축	도시 수자원	교통 토로	집단 민원	현장 고충
계	106	34	2	2	3	22	23	6	7	7		
제안	51	16	1	-	1	16	13	1	2	1		
민원	55	18	1	2	2	6	10	5	5	6		

현장방문

2028년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예정부지인 삼산·여천 매립장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지원 대책 등을 논의.

국정기획위원회 주관
제안 및 민원 등 직접 듣고 해결

5. 국민권익위 합동 실지조사

관련 : 2BA-2502-0535263(울주군 무동마을 진입로관련)

출 장 지 : 울산 울주군 무동마을

출장기간 : '25. 5. 30.(금) 13:00 ~

참 석 자 : 15명

- 울산시(4), 국민권익위(1), 김해국토관리사무소(2), 울산 울주군 도로과(2), 무동마을 주민(6)

주요 내용

- 사업예산 관련 부서 업무협의 등

합동조사

6. 양산시 옴부즈만 울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방문

방문 개요

일시 : 6. 27.(금) 11:00~13:00

장소 : 권익인권담당관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방문인원 : 8명<양산시 옴부즈만(5), 청렴윤리팀장 등(3)>

방문목적 : 위원회 운영 주요시책 및 활성화를 위한 자료 수집 등

주요 논의사항

울산 시민고충처리위원

- 울산시와 양산이 차기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사랑방처럼 누구나 쉬어가고 마음이 편하게 찾을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힘쓸 것

양산 옴부즈만

- 울산시의 고충민원시스템을 보고 양산시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함.
-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는 양산시의 정책에도 접목시켜 보고 싶음.
- 현재는 상근 1명, 비상근 5명의 운영체제로 돌아가고있으나 향후에는 울산처럼 전원 상근으로 전환하는 방법 고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겠음.

방문사진

7. 고충민원 권익구제 포럼

개요

일시 : 11. 11.(화) 14:00 ~ 15:00
장소 : 시민홀
교육인원 : 60명(시, 사업소, 구·군 및 공사·공단 등 관계 공무원)
주　제 : 고충민원 처리 관련 우수사례 소개, 현안 고충처리방안 논의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주요내용

주제발표 : 2명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현황과 역할 / 박문수(전국시고위 의장)
- 고충민원 해소 우수사례 발표 등 / 신동택(평택시 시고위 위원)

8. 교육 및 역량강화

개요

일시 : 2025. 11. 26.(수) ~ 11. 28.(금)[2박 3일]

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참여인원 : 8명(시민고충처리위원 5, 고충민원지원팀 3)

강사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김재윤

주요 내용

- 전라남도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담회
  - 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현황 소개
  - 고충민원 우수 처리사례 공유 및 협력강화
- 고충민원 해결사례 특강
  - (1차시) 고충민원 처리 제도, 민원의 의의
  - (2차시) 고충민원 해결사례의 쟁점
    ·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단속
    · 변칙금과 직권취소 등
- (3차시) 고충민원 대응기법

워크숍 결과

고충민원 해결사례 특강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과 담당 공무원의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접근방법 등 역량강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체계 구축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교류·협력 간담회

고충민원 해결사례 특강(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9. 홍보

다국어 고충처리 안내책자 제작

최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라 행정서비스 이용 시 언어 장벽으로 인한 민원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다국어 고충처리 안내 책자 제작.

제작 부수 : 총 290부

제작 언어 : 5개국 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주요 내용 : 고충민원 신청 방법 안내 및 민원 처리 절차 등

주요 성과 : 외국인 가정의 민원 접근성 제고 및 행정 참여 확대

브로슈어 및 리플릿 제작

브로슈어 및 리플릿 제작을 통해 주요 정책 및 민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인지도와 이용 편의를 제고함.

통·이장단 홍보 및 현장 홍보

지역 주민과의 접점이 있는 통·이장단을 통해 고충민원 제도에 대한 안내와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찾아가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할과 이용 방법을 홍보.

다국어 안내책자 및 브로슈어

V

우수활동 사례

1 수돗물 탁수 해결 요청

신청원인 | 남구 장생포고래로 일원 약15세대에서 수돗물 녹물 발생 등 탁수 문제로 10여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해왔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조치를 요청함.

피신청인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남부사업소장)

관계법령 | 수도법 제2조

판단 |

1986년(관경 100mm, 연장 200.8m) 부설되어 노후, 불량이 원인으로 추정됨.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흐린 물 민원이 반복되고 있었으며, 피신청기관은 제기되는 민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토를 하여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2024. 12. 20. 우리위원회 현장 방문하여 세대 내 수도전에서 수돗물 상태를 확인한 바 육안으로 흐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토만으로 이 민원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수도법」제2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고,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피신청인은 33세대에 대하여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시설 관리 및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주문) 의견표명

피신청인은 장생포 고래로 ○○번길에 맑은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불량 배수관을 조속히 교체할 것.

2 남구 아파트 주변 안전휀스 및 볼라드 철거 요청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관련 아파트 인근 상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휀스 및 볼라드로 인해 통행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상권활성화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안전휀스 및 볼라드 철거 요청.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2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38조

판단

피신청인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휀스 및 볼라드는 보행자(어린이)의 추락 및 무단횡단 방지와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안전 시설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이므로 철거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민원은 2023. 11월경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요청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당초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부 조정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조건으로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이 축소 지정되었음.

2024. 12. 26. 현장간담회 시 어린이보호구역이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관련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상가들로 교통안전 시설물 철거 시 일반주민 및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조치로 철거는 불가할 것으로 보여짐.

볼라드는 보도에서 자동차 등이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불편 없이 안전한 통행권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다만 일부 볼라드가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위치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주문) 의견표명(볼라드), 심의안내(안전휀스)

피신청인은 관련 보도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볼라드의 위치를 조정할 것.

관련 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축소지정된 구역이나 교통안전 시설물(안전휀스)은 교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임을 안내 함.

3 언양 ○○공원 편입 토지 보상 및 해제 요청

신청원인

신청인은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번지에 도시계획시설(언양○○공원) 결정 고시 후 13년이 경과하였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상 공원 조성 시점이 장기화 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상황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하거나 공원 해제 요청.

피신청인

울산광역시장(녹지공원과장)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48조, 제8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판단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민원 토지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신청인이 해제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임.

언양문화공원은 2010년 110만 울산시민의 염원인 KTX 울산역을 개통하면서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역세권 주변에 도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청취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0년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 후 2012. 2. 16.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24호) 하였으며, 그 후 KTX 울산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 기본계획 상 울산의 신도심 육성, 복합특화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 추가적인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언양○○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지정 취지에 따라 조속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신속히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주문) 의견표명

피신청인은 울산 언양○○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이 민원 토지를 조속히 보상하고 시행할 것.

4 울주군 상북면 ○○마을 버스승강장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요청

신청원인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번지 상북로(언양방향) 버스정류장의 버스 시간 안내가 없어 주민 불편이 크므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함.

피신청인

울산광역시장(교통기획과장)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제3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

판단

2025. 2. 17. 현장확인 결과 100세대 187명이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 중심 농촌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버스정보가 소외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언양 방면 하행 정류장은 좁은 공간으로 승강장 설치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

또한 이용객 다수는 고령자로서 상행버스승강장에 대기하다가 상북로를 횡단하여 하행 버스 탑승과정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주민 불편과 교통행정 불만이 클 것으로 보임.

아울러 2024년도에 울주군으로부터 동일 내용으로 주민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민원이 해소되지 않아 재차 교통행정의 불만을 제기한 상황임.

현재 피신청인은 이 민원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감하고 있고 이용객을 위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를 계획 중임.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버스정보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도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 사업에 반영하여 울주군 상북면 ○○마을 버스승강장내에 하행정류장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의견표명

피신청인은 버스정보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울주군 상북면 ○○마을 하행정류장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설치 할 것.

5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요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사업용 자동차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차고지를 위하여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번지에 차고지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진입로 부분에 해산된 법인 소유의(반천리 ○○-○, 14㎡) 토지 사용동의서를 받지 못해 4m진입로 확보가 안되는 상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우선 받고 추후 법인이 나타나면 상응한 임대료 지급 등 허가 기준 완화를 해달라는 요청.

피신청인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도시과장)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건축법 제2조, 45조

판단 | 현지 출장한 바에 따르면 해당 부지 언양읍 반천리 ○○-○번지가 울주군수가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아니지만 현재 묵시적으로 2000년부터 약 25년간 현행 도로로써 이용되고 있고 또한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인근 공장과 농경지의 도로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피신청인은 차량 진입 문제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허가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신청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마을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 의거하여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이해 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

살피건데 언양읍 반천리 ○○-○외 1필지에 공장을 건축하면서 해당 부지인 언양읍 반천리 ○○-○번지가 도로에 포함하여 설계되어 준공되었다는 것은 과거 건축허가 시에는 도로로 인정이 되었지만 현시점의 개발행위 허가가 인정이 안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현재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25년 동안 인근 공장과 농로로써 다수가 도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타 시·군·구에서도 사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현행 도로(=지목:도로)로써 대부분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해당도로 면적이 14㎡로 향후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작은 면적으로 추후 소유주와 매매 및 임대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할 경우 부동의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지나친 행정규제로 인해 사업의 불투명성에 대한 손실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볼 때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주문) 의견표명

피신청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리 ○○번지의 차고지 사용을 위하여 신청인의 개발행위를 허가해 줄 것.

6 박상진 호수공원 앞 회전 교차로 진입방향 표시 요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북구 오토밸리로에서 박상진 호수공원 앞 회전교차로로 합류되는 구간에 초행일 경우 진입금지 표시가 없어 역주행 사고가 우려되어 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사고 예방이 필요.

피신청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3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판단 | 사실확인을 위해 현장을 확인한 바 해당 구간은 북울산역 진입도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2023년에 준공되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관련 민원이나 사고는 없지만,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진출입 금지 표지판, 노면표시가 필요.

(주문) 의견표명

피신청인은 북구의 오토밸리로와 박상진 호수공원 앞 회전교차로 지점에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금지 표지판, 노면 표시 설치할 것.

7 남구 ○○아파트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요청

신청원인

남구 신정4동 소재 ○○아파트는 '24. 6.경부터 3~5층의 수압이 약해 정상적으로 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에서는 '24. 10.경 스마트계량 수압계를 설치하여서 한 달 뒤 부터는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수압이 약해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 원인이 인근 지역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수압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옥상 물탱크 철거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조치가 필요.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남부사업소장)

관계법령

「수도법」제2조, 제38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제1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

판단

이 민원 아파트의 경우 급·배수관으로부터 계량기까지는 정상적인 수압으로 급수가 됨에도 3~5층에는 제대로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인근 재개발 지역의 공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며, 인입급수관의 관경이 기준보다 부족하고 옥상 물탱크 철거 후 직결급수로 전환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안정적인 물 사용을 위해서는 관경 교체나 지하저수조 또는 옥상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주문) 심의안내

신청인은 수압이 약한 사유를 재개발 지역의 공사로 인한 수압 불량이 원인이라고 하나, 급수문제는 재개발 공사가 아니라 관경 부족과 직결급수 전환 때문으로 보이며, 개선을 위해 설비보완이 필요하고 노후 급수관은 조건충족시 교체·보수비용 지원이 신청 가능함을 안내함.

8 남구 종하거리 공영주차장 주차가능 진입대수 현황판 조정 요청

신청원인

신청인은 남구 종하거리 공영주차장 가능 대수 현황판 표기상 일반주차 대수가 4~5대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차로 설정되어 주차 출입 게이트가 열리지 않아 주차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 가능 대수 표기의 오류를 정정 요청.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관계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 제6조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0조

「울산광역시 남구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판단

종하거리 공영주차장의 주차현황판에 일반 주차면과는 별도로 특수 주차면 주차 가능 차량이 입차하여 주차하면 일반 입차 가능 대수가 줄어드는 문제점을 최대한 개선하거나 또는 전부 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고객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이 될 수 있으므로 특수주차면에 대한 안내 홍보를 위한 표시를 보완하고, 주차현황판 집계방식을 개선할 것.

(주문) 의견표명

피신청인은 종하거리 공영주차장 특수주차면에 대한 안내 홍보를 위한 표시를 보완하고, 주차현황판 집계방식을 개선할 것.

9 울산○○고 정문주변 교통환경 개선 요청

신청원인

울산○○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등·하교 시간에 혼잡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학생들이 버스에서 승·하차 할 때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베이 설치 등 승강장 주변 교통환경 개선 요청.

피신청인

울산광역시장(교통기획과장)

관계법령

「교통안전법」제3조, 제4조, 제22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40조

판단

(교통기획과 의견) 울산 ○○고등학교 앞 버스승강장은 편도 1차선 도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승하차 정차 대기시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교통정체로 학부모 차량 및 교행차량과 시내버스가 뒤엉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도로부지 공간이 협소하여 시내버스 정차시 도로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 그 대안으로 차로폭을 일부 조정하여 버스정차대(블루라인)를 설치하는 방안 제시.

(한국도로교통공단 의견) 현장 간담회 결과 도로 선형을 50㎝정도 조정하여 양방향 승강장 모두 블루라인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의견 제시.

따라서 피신청인도 ① 도로의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등·하교 시간에 교통정체로 도로가 혼잡하여 학생들의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점 ② 버스승강장 주변 교통환경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도로부지 공간이 협소하여 시내버스 정차시 도로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점 등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앞에 장기적인 별도의 부지매입 없이 차로폭 조정으로 신속한 설치가 가능한 버스정차대(블루라인)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주문) 의견표명

피신청인1은 울산○○고등학교 학생들이 버스에서 승·하차 할 때 도로 정체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승강장 앞에 버스정차대를 설치할 것.

피신청인2는 울산○○고등학교 학생들이 버스승강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차대에 맞게 개선할 것.

10 울주군 웅촌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 입구까지 인도 설치 요청

신청원인 | 울주군 웅촌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 입구까지 인도가 없어 이예로 개통 이후 대형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라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인도 개설을 요청.

피신청인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도로과장)

관계법령 | 「도로법」제2조, 제3조, 제54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판단 |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민원구역은 왕복 2차로 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 공간이 없으며, 대형 차량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의 보행에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도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함.

해당 민원 구간은 웅촌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실시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이는 웅촌 ○○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왕복4차선 구간으로 확장되어 인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고, ○○교 또한 확장으로 인도가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구간에 대해서는 웅촌 ○○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 해결 될 것임.

다만 해당 민원구간은 ○○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까지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것.

(주문)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해당 민원 1구간의 웅촌 ○○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시 까지의 보행자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해당 민원 2구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예산을 편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

11 울주군 웅촌면 ○○○○ 진출입로에 이동 편의 시설 요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웅촌로(구7번국도)에 ○○마을 안내표지판과 ○○○○의 양방향 인도 및 진출입부

피신청인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도로과장)

관계법령 | 「도로법」제2조, 제3조, 제54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판단 | ○○○○는 교량 폭 10m(편도 1차도 각각 3.5m, 인도2m, 양방향 길어깨 각각 0.5m)로 한쪽에만 인도가 설계·준공되었고, 인도 추가 설치 시 차로의 폭 확보가 불가한 상황임. ○○○○ 인도 연결부 도로에 인도 설치는 도로 주변에 국·공유지 여유 공간이 없고 농기계 회전반경 확보 등 현장 여건상 인도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웅촌로에서 ○○마을 방향 진입 안내판 설치는 가능하므로 조속히 설치할 것. 아울러 신초천교 인도 및 주변 도로 이용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신초천교 진출입 차량의 감속운행 유도를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것.

(주문)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 진출입로에 과속방지턱 및 ○○마을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12 울주군 관내 경로당 TV수신료 일괄 면제 신청 요청

신청원인

울주군 마을회관(경로당) 시설의 TV수신료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면제를 해주고 있으나, 시설사용자가 노인분들이 대부분이라 개별신청이 어렵고 번거로워 타지자체(전북 정읍)처럼 복지 시설은 TV수신료 일괄 면제되도록 요청.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노인장애인과)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제36조, 제37조

「방송법」제64조

「방송법 시행령」제39조

판단

25. 2. 3.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원인과 함께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직원과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상담을 하였으니 시 보훈노인과와 울주군 노인장애인과에서 발송한 공문에는 신청에 대한 협조의 내용만 있어 신청인이 요청한 일괄 면제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도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울주군에 등록된 경로당 413개소를 조사하여 '25. 5. 30.까지 전체 경로당에 대한 방송 수상기 일괄 등록 면제된 것을 KBS한국방송에 유선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청이 해결.

(주문) 조사중 해결

피신청인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울주군에 등록된 경로당 413개소를 조사하여 2025. 5. 30. 까지 전체 경로당에 대한 방송 수상기 일괄 등록 면제된 것을 KBS한국방송에 유선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 함.

13 울산시청사 정원 광장 내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함 설치

신청원인 | 울산시청사 외부 및 부속건물 주변 반려견 산책을 자주 하지만 배변수거함이 없어 불편하므로 설치를 요청.

피신청인 | 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제3조, 제4조, 제16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1조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제1조, 제3조, 제4조 등

판단 |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1호에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같은 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항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같은 조례 제10조(반려문화 조성) ① 항에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울산시청 정원 광장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과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산책하는 인근 주민들의 편의와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배변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주문) 조사중 해결

피신청인은 울산시청 정원 광장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과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산책하는 인근 주민들의 편의와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배변수거함을 설치할 것. 2025. 7. 3. 반려동물 배변수거함 설치 완료하여 신청인의 요청이 해결되었음을 안내 함.

14 중구 ○○○○1차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주변 교통환경 개선

신청원인

중구 우정동 ○○○○1차아파트 앞 편도 1차로에 위치한 버스승강장은 중구 ○○번 마을버스의 종점으로 버스가 장시간 정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차량들이 버스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통행하면서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에는 장시간 버스 정차로 인해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여 지난 10년이 넘도록 버스승강장 위치를 조정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

피신청인

울산광역시장(버스택시과장)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제32조

「교통안전법」제3조, 제4조, 제22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4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판단

「교통안전법」제3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는 교통시설 설치, 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제2항에 국가등은 주거지. 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다른 시책을 강구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 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 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지금처럼 종점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대기 정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판단

그래서 피신청인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버스승강장을 이전하거나 일방통행으로 변경 시 인근 지역주민들과 버스승강장 이용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기존 버스 승강장을 이전하거나 폐지하는 것보다 승강장 대기 정차 없이 승·하차만 순환 운행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 버스택시과에서 '25. 7. 21. 부터 승강장 정차 대기 없이 승·하차만 하는 순환 운행 방식으로 변경하였다고 설명하자 참석한 신청인들은 순환 운행 방식으로 변경한 울산시의 결정에 적극 공감.

(주문) 조사중 해결

피신청인은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 기존 버스승강장을 이전하거나 폐지하는 것보다 승강장 대기 정차 없이 승·하차만 하는 순환 운행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에 신청인들은 순환 운행 방식으로 변경한 울산시의 결정에 적극 공감하여 신청인의 요청이 해결되었기에 이를 안내함.

15 남천로 천전사거리 부근 자전거도로 공사 요청

신청원인 |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에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불편하므로 자전거를 타고 오르도록 공사가 필요하다는 요청.

피신청인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건설과장)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1조의2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판단 |
계단식 자전거도로에서 인도 및 제방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계하려면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도록 계단 중앙에 경사로가 설치되어있어 노약자는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고 자전거 이용자도 다른곳으로 우회를 하고 있어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경사로를 설치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단을 따라서 자전거를 끌어 올리는 식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사도는 25%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민원 위치에 설치된 계단식 자전거도로는 경사도가 43%가량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6. 1. 2. 자전거 도로 및 시설정비를 보면, 자전거도로의 신규 개설보다는 기존의 도로망을 더욱더 알차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정비하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하천변 노선들은 유지보수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으로 판단된다고 적시되어 있음.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과 같이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계단을 철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여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하천변의 자전거도로와 인도 및 제방에 설치된 다른 자전거도로가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보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면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하고,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경사도가 8.33% 이내여야 함을 의미하여 이 민원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경사도가 9%로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주문) 의견표명

피신청인은 기존 계단식 자전거도로를 철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할 것.

16 북구 강동동 ○○마을 주변 도로공사관련 교통환경 개선 요청

신청원인

신현교차로-(구)강동중 도로확장공사 구간 중 ○○마을 입구 진입로 확장 및 경사도 완화.

○○○○ 재가설 및 주변 제방고 상향 조치.

농소~강동간 도로 공사용 가설도로 영구 존치.

피신청인

울산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종합건설본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건설과장)

관계법령

「도로법」제3조, 제50조

「교통안전법」제3조

「하천법」제3조, 제25조, 제27조, 제3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판단

㉮ ○○마을 입구 진입로 확장 및 경사도 완화 요청건은 종합건설본부장이 개선 방안 제시.

㉯ ○○○○ 재가설 문제는 하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타당.

㉰ 농소~강동 도로개설 공사용 가설도로 무룡천 제방도로를 공사종료 후에도 원상복구 하지 말고 존치하여 달라는 민원은 피신청인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협조 요청하면서 심의 안내.

(주문) 의견표명 및 심의안내

피신청인 1은 ○○마을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교차로 ~ (구)강동중 도로확장공사 구간 중 ○○마을입구 진입로 폭을 확장하고 경사도를 완화하여 시공할 것.

피신청인 1과 2는 ○○마을 입구 주민들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를 ○○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재가설 할 것.

피신청인 1과 2는 농소 ~ 강동 도로개설 공사용 가설도로를 영구히 존치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을 협조 요청함.

17 ○○중학교 앞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요청

신청원인

○○중학교는 언양, 삼동 등지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장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상 버스노선이 적고 배차간격이 길어서 버스승강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으나, 버스승강장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폭염 및 우천시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버스승강장 인근에 그늘막 설치 등 버스승강장 주변 교통환경 개선 요청.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환경기후과장, 교통정책과장)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4조

「교통안전법」제3조, 제4조, 제22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40조

판단

○○중학교 학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학교 앞 버스승강장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여짐.

피신청인도 언양방향 버스승강장은 협소 한데도 이용 인원이 많아 대기공간 부족으로 호우시 비를 맞으면서 버스를 기다려야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학생들이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승강장 시설을 일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감하고 학교측과 협의하여 언양방향 버스승강장을 확장하기로 합의.

(주문) 의견표명

피신청인은 ○○중학교 학생들이 버스승강장 대기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버스승강장을 확장 설치 할 것.

18 ○○시장 아케이드 누수로 인한 빗물판 추락 위험 해결 요청

신청원인

신청인은 신정시장 아케이트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누수가 되고 빗물판이 추락할 위험성이 있어 보수를 요청함.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경제정책과장)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조, 제6조, 제20조

「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 제4조

판단

○○시장 아케이드는 2005년 준공되어 20년이 경과된 상태로 전반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을 근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에 따르면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 사업비 22,000천원을 확보하여 '25. 3. 1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선정 후 같은해 5. 28. 상인회 미팅 및 현장 조사를 거쳐 누수 민원 점포 목록 확인 및 누수 지점을 확인함.

2025. 6. 17. 공사 계약을 체결,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누수가 확인되어 같은해 3차 재보수를 마친 상태로 강우 시 누수가 확인 될 경우 추가 보수 예정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같은해 9. 9. 강우 시 또다시 누수가 확인되어 해결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시장 아케이드 누수 원인을 정밀 진단하여 조속히 누수 차단 및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

(주문) 의견표명

피신청인은 ○○시장 아케이드 누수 원인을 정밀 진단하여 조속히 누수 차단 및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

19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착공 수리 요청

신청원인

두서면 전읍리 ○○○○-○번지에 공장신축을 하려고 했지만 일부가 문화재 발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행위가 중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적자가 초래되고 있어 기존 발굴이 완료된 공장용지에 공장 신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요청함.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신성장개발과, 문화도서관과장, 건축허가과장, 지역경제과장)

관계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9조, 제11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9조

「건축법」제11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판단

본 민원 신청인은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번지 ○○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토지 일부가 '24. 3. 13. 울산시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지역에 포함되어 건축행위 및 모든 행위가 중지됨에 따라 이로 인한 막대한 예산과 재정적 적자가 초래되고 있어 기존 발굴이 완료된 지역에 먼저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해당 지역은 2009. 8. 5. ○○○○(주) 대표 ○○○부터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아 2010. 2. 18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2015. 4. 9.일로 준공한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용지이다.

위 산업단지는 당초 전체면적 70.856㎡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향후 인근 부지의 편입요청 민원으로 사업 부지가 71.618㎡로 증가되어 준공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기존 70.856㎡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굴을 마쳤으나 추후 늘어난 면적에 대한 문화재 시굴 결과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신청인의 부지에는 추가 편입된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판단

당초 개발행위를 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자는 해당 부지의 대부분은 정밀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신청인의 공장용지에 포함된 추가 편입토지의 일부가 2024. 3. 13.일자로 실시된 울산광역시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결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포함되어 동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반산업단지 조성 개발 당시 매장 유산 보존지역에 따른 발굴을 하였다면 2024. 3. 13. 자로 실시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과 관계없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시 문화재 관련 부서와 협의 및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2025. 9. 2.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건축행위를 처리하기 위해 2025. 8. 26.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미 발굴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공장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여 종결 처리하고자 함.

(주문) 조사중 해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2025. 9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건축행위를 처리하기 위해 2025. 8월 국가 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미 발굴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공장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함.

20 골프공 피해 방지를 위한 비구방지망 설치 등 요청

신청원인

신청인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 용연길 ○○○-○○소재 ○○○카운터 ○○○에서 날아오는 골프공과 식재된 나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구방지망을 설치하고 식재된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요청.

피신청인

울산광역시장(체육지원과장)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10조의 2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8조

판단

신청인은 여러 차례 이 민원 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측에서도 조치를 취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에서 약속한 그물망 설치를 요구하고 식재된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과 일조량 감소 및 통풍이 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가 있다며 그물망 설치와 식재된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요청임.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 제기로 ○○○측에서 실시한 안전조치 이후 비구 발생 빈도는 감소하였으나 현재도 일부 비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비구방지 대책 방안 이행 계획을 2025. 11.30. 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비구방지대책 검토·이행지시 후 그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임.

골프공 비구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하는 안전시설의 높이에 대한 규정이나 골프장과 인접한 주거지 및 농경지 등과 거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관계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주문)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개발, ㈜○○○카운티를 상대로 피해 예방에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지시를 할것.

21 언양터미널사거리 울산방향 도로 교통환경 개선 요청

신청원인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109번지 앞 언양터미널 사거리 울산방향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차량의 회전이 어렵고 차량정체 등 불편하므로 확장 등을 통한 도로 구조 개선을 요청함.

피신청인

울산광역시장(교통기획과장),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도로과장)

관계법령

「교통안전법」제3조, 제4조

「도로법」제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판단

이 민원 신청인은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109번지 앞 언양터미널 사거리 울산방향 도로(언양로)가 협소하여 대형차량의 회전이 어렵고 차량정체 등으로 도로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하므로 도로확장 등을 통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피신청인2(울주군 도로과장)는 이 민원 도로는 2015년 7월 도로사업 완료한 구간으로 현재 통행상 어려움이 없으며, 해당 구간 일원은 대형마트 입점 및 고속도로 통로 박스 위치로 제반여건상 도로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안전법」제3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3조 제2항 제1호와 4호에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도로 기능과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1호에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으로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된다.

판단

살펴보건대, 이 민원 도로는 지역주민들과 KTX울산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언양시장을 비롯한 언양 읍내로 들어오는 관문 도로이지만, 첨두시(17~18시) 교통량은 언양터미널사거리에서 어음사거리 방면으로 374대, 어음사거리에서 언양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248대, 반구대로 언양터미널사거리는 1,714대로 조사되었으며,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어음사거리에서 언양터미널사거리로 진입하여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평균 대기 시간은 대략 2분39초(159초)인데 반해 우회전의 대기시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개의 차선중 1차선은 직진과 좌회전으로 운용하고 있고, 2차선은 우회전 전용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1차선에서 대기하는 차량은 신호 한 번으로 전부 이 민원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두 번 이상의 신호를 받게 되고 신호 대기 시 출발 지체로 인한 과포화 주기(Cycle failure)가 발생하여 차량정체가 지속되고 차량 소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대형차량은 언양터미널사거리 신호대에서 경주 방향에서 진입하여 좌회전 신호를 받아 어음사거리 방향(울산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부산방향에서 진입하여 우회전하여 어음사거리 방향(울산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어음사거리 방향 (울산방향) 도로(언양로)의 폭이 좁아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아서 2~3번을 전후진하며 조정하여 진입해야 함으로 인해 교통정체 현상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회전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도로확장을 통한 도로 구조개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울주군 도로과장은 이 민원 도로는 2015년 7월 도로사업 완료한 구간으로 대형마트 입점 및 고속도로 통로 박스 위치로 재정여건, 경제성, 토지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제반여건상 도로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도로확장은 어려울것이 예상되므로 각급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단기적으로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장은 울주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① 경주방향에서 울산방향으로 좌회전 유도선을 완만하게 조정, ② 언양로의 대기차선을 울산방향으로 1m정도 후퇴시키고, ③ 신호 대기시간 조정 및 연동(옵셋) 조정하고, 울주군 도로과장은 ④ 고속도로 하부구간 인도를 축소하여 차로수 확대(2차선 → 3차선) 및 차로 재분배, ⑤ 고속도로 옆 부체도로 우회전 전용 활용 등의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신호체계와 구조개선을 통한 민원 해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판단

아울러 이 민원 도로가 울산 시내와 KTX울산역에서 언양읍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관문 도로이므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언양읍 주변 개발에 따른 통과 교통량의 증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로의 용량증대 (차로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피신청인2 (울주군 도로과장)는 현재 개설된 언양로 폭(15m)에서 고속도로 교량 하부 도로의 폭(17.6m)만큼 2.6m 정도 라도 확장하여 도로의 용량을 증대 (차로의 추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사항들을 종합 해 볼 때 이 민원 도로가 울산 시내와 KTX울산역에서 언양읍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관문 도로이므로 우선적으로 언양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피신청인1(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장)은 신호체계와 구조개선을 통한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피신청인2 (울주군 도로과장)는 고속도로 하부구간 차로수 확대 및 고속도로 옆 부체도로 우회전 전용 활용 대책 등 향후 언양읍 주변 개발에 따른 통과 교통량의 증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로 확장 방안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의견표명

피신청인 1은 언양지역 주민들과 KTX울산역 이용 방문 관광객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울주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신호 체계 및 구조개선을 통한 교통 불편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할것.

피신청인 2는 언양읍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로 확장 방안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할것.

2025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발 행 일 2026년 3월

발 행 처 울산광역시 권익인권담당관(시민고충처리위원회)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전화번호 052.229.3931~4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울산광역시에 있습니다.(비매품)